



가축개량기술정보

社団法人 韓國國家高人工授精師協會
 서울시서초구서초3동 1516-5 축산회관내
 발행인: 이재우 전화: 02)587-0629
 편집인: 방효범 02)586-9408
 FAX: 02)586-9408

적극적인 소 전산화 사업 참여를

회장 이재우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이제 추수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마등처럼 가 버린 금년을 보면 년초의 계획에서 시행까지 큰 착오는 없었으나 고충은 더욱 컸습니다.

인공수정사업의 위축과 인력과 자금의 압박속에서 보수교육을 상반기에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은 하였지만 고생한 만큼의 성과는 만족할 수준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민주화, 지방화, 자치화의 세태 변화는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훌륭한 제도로서의 정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변화에 적응했는가 반성을 해 봅시다.

지금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움에 도전치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사회의 발전과 축산현장의 변화에 부응하는 우리의 현실인식은 더욱 적극적인 참여만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자기권익보호의 단체 하나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협회의 모습이 달라지고 회원 여러분의 위상이 높아져 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합심하는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문 사무국장의 예기치 못했던 사망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30여년간 공직에서 봉사하셨고, 오

시기 전에는 경기도 종축장장으로 계시던 방효범님을 국장으로 모셨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획기적인 협회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금번에 실시되는 소 전산화 사업을 보면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축산현장에서의 필수요원임을 절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수 없는 협의에 참여하고 축산현장에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던 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도록 되었습니다.

소 전산화 사업은 정확한 소 두수의 파악, 개방에 따른 수급 조절 및 급격한 소값 변동의 방지책, 지속적인 전국규모의 개량체계, 생산기반 확보로 안정제도 입 준비, 양축농가의 보호와 소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함이라고 봅니다.

평소 수정사의 역할은 음지에서 돋보이지 못한 존재들이었으나 이제부터 정부의 시책에 명분있게 참여하고 양축농가를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강조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축산이 살아남고 발전 내지는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우리 모두 존재하게 됩니다.

어떠한 조직 단체와도 서로 융합하여 축산발전에 기여합시다.

특히 이번 연말을 기하여 실시되는 소 전산화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안정적인 정책의 입안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협 회 연 혁

1984. 6. 25	경남 도지회 창립(경남 진주)	1990. 11. 5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발기대회 (축산회관)
1986. 10. 15	충북 도지회 창립(청주)	1991. 1. 15	농림수산부장관 법인설립 허가
1987. 11. 27	한국민간가축개량사회 발기대회 (충북 청주)	1991. 1. 25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사단법인 등록
1988. 3. 15	강원 도지회 창립(춘천)	1993. 8. 18	경기도 남·북지회 분리(용인)
1988. 4. 22	충남 도지회 창립(신탄진)	1994. 2. 22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기관지정 (농림수산부 94축산발전사업계획)
1988. 5. 10	경북 도지회 창립(대구)	1995. 2. 25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 (농림수산부고시 제1995-11호)
1988. 6.	경기 도지회 창립(퇴계원)		
1989. 3. 23	전남 도지회 창립(광주)		
1990. 5. 5	전북 도지회 창립(전주)		

소 전산화사업 실시

농림수산부 축산국

1. 목적

- 2001년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맞이하여 예측할 수 없는 소값 변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정정보장장치 강구
-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

2. 추진방향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급관리
-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한우·젖소 개량사업 확대 실시
- 송아지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안정제 도입체계 구축
- 소 개체별 질병기록관리로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

3. 투융자계획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94까지	'95	'96	'97	'98	'99	합계
사업량		-천두	2,530	1,180	1,180	1,180	1,180	7,250
재원별	추발기금	-	14,123	-	-	-	-	14,123
	농특회계	-	-	12,024	12,024	12,024	12,024	48,096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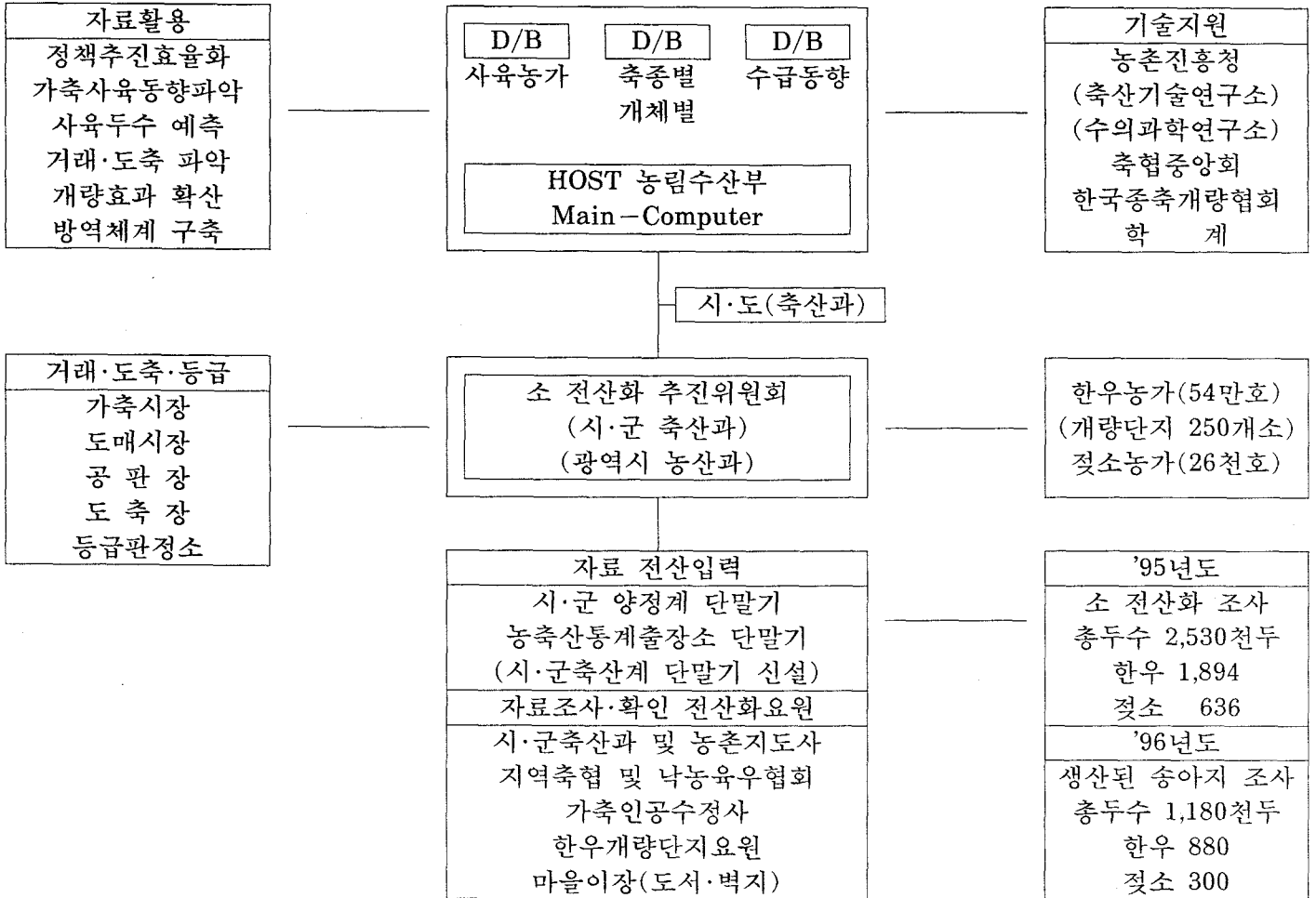
(1) 사업내용

- 전산입력대상 : 한우·육우·젖소의 암소와 '95. 10월 이후 생산되는 송아지

(2)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
 - 소 사육농가 : 한우송아지 생산농가에 대하여 송아지 전산입력 완료후 조사사례비로 사료(인공유)공급
 - 전산화요원(인공수정사 등) : 소에 바-코

(4) 사업시행체계



다. 사업시행

(1)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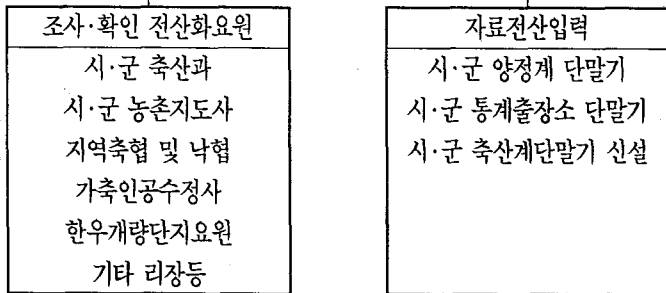
- '95. 9~10월 : 교육 및 홍보
 - 전산화요원 일제교육(5,400명 추산), 농가별, 개체별 조사표 작성요령 배포
 - 소 사육농가에 대한 소 전산화실시 홍보 및 홍보용 리후렛 50만부 배포
- '95. 10월 30일부터 소 전산입력 및 바-코드가 표장착
 - 암소(임신 3~4개월령 및 10개월령은 일시 제외후 바-코드가 표장착)
 - '95. 10월 30일 이후 생산되는 송아지
- '96. 1월 : 농가별, 축종별, 개체별 원부완성 및 D/B구축(수정보완)
- '96년도부터는 새로이 생산되는 송아지를 대상으로 전산입력

(2) 단계별 세부추진요령

(가) 시·군 소 전산화 추진위원회 구성

- 시·군에서는 관내에 시·군 소 전산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맡도록 함
- 시·군에서는 해당 관련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에서 소 전산화요원을 운영하고 소사육농가 지도
 - 소 전산화요원을 구성할 수 없는 낙도, 산간 오지 지역에서는 리장을 전산화요원으로 지정 운영
- 소 전산화 추진위원회 및 전산화 요원

시·군 소 전산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 부시장 또는 부군수



(나) 소 전산화 요령

- 대상축종 : 한육우 및 젖소의 암소와 '95. 10월 30일 이후 생산 송아지
- 전산화 : 시장·군수 책임하에서 시·군 소 전산화 추진위원회에서 실시

○ 조사표 작성·확인 및 바-코드가 표장착

- 전산화요원이 농가 실태조사표(양식1) 및 개체별조사표(양식2)를 작성·확인한후 노랑색 바탕에 검정글씨의 바-코드가 표장착
- '95. 10. 30부터 조사표작성 및 바-코드가 표장착 착수시 임신 3~4개월령 및 10개월령(만삭)의 소에 대하여는 우선 조사표만 작성하고 바-코드가 표는 장착 가능한 시기에 실시

○ 조사표 통보 및 전산입력

- 전산화요원이 추진위(시·군 축산과)에 조사표(양식1, 2)를 통보하면서 시·군양정계 또는 농림수산 통계출장소 단말기를 이용하여 우선 전산입력하고 축산과 단말기 설치 완료시 축산계 독립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산입력 추진

○ 전산화 증명서 발급 및 기자재 공급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바-코드가 표, 장착기, 체중추정척을 추진위원회에 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에 전산화증명서 발급

최초 소 전산화

① 일반농장

- 추진위는 읍·면별로 지역담당 전산화요원 실시조(2~3명)를 편성하여 조사표 작성, 바-코드가 표장착, 소보정등을 축주(신규참여포함)와 협의하여 농가별 실태조사표(양식1) 및 개체별 조사표(양식2)를 작성
 - 개체별 조사표 작성시에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소에 대하여는 아비명호란에 등록번호를 기재
- 바-코드가 표 장착시 1두 1두씩 소 개체별 조사표에 바-코드번호를 기록한 후 왼쪽 귀에 바-코드 이표를 장착

② 공공기관 및 전기업목장(자체실시농가 포함)

- 추진위에서 배부하는 전산입력 기자재(바-코드가 표, 장착기, 체중추정척)와 농가별 및 개체별 조사표를 수령하여 자체적으로 바-코드가 표장착후 조사표(양식1,2)를 작성하여 추진위에 통보

③ 바-코드가 표장착 여부 확인

- 지역담당 전산화요원은 관할지역내의 소에 대하여 바-코드가 표를 장착한 후 농가별 및 개

체별 조사표(양식1,2)를 작성하여 추진위에 통보

- 추진위에서는 바-코드이표 장착여부를 확인

④ 전산입력

- 추진위는 전산입력요원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정하고 시·군 양정계 또는 농림수산 통계출장소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산입력한 후 농림수산부 전산실로 입력
- 추진위에서는 전산입력자료가 방대하여 자료입력이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에서 신속히 원활하게 입력되도록 시·군간 입력물량을 조정

보받은 조사표(양식2)를 매월 시·군 양정계 또는 농림수산 통계출장소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산입력

(3) 사업비 지급요령

(가) 농가 조사사례비

① 대상

- 소 전산화를 완료한 어미소에서 생산되어 전산입력을 완료한 한우송아지 생산농가 단, 기존의 한우개량단지(전국 250개소)에 참여하여 생산된 한우송아지는 제외

② 기준

- 전산화한 어미소로부터 생산된 송아지가 전산화를 마쳤을 경우 두당 사료(인공유 25kg, 6,000원 상당수준)공급
 - 전산화가 완료된 한우가 쌍자를 생산할 경우 사료(인공유 25kg) 추가공급
 - 사료(인공유 25kg)공급기준은 지역축협별 농가판매가격 기준

③ 방법

- 추진위는 전산화가 완료된 소에서 송아지생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전산화요원에게 바-코드이표 및 조사표(양식2)를 배부하고 사료(인공유) 공급권(양식8)을 지급
 - 전산화요원은 송아지생산통보에 의거 바-코드이표장착 및 조사표 작성 후 대상농가에 사료(인공유)공급권 지급
 - 추진위는 전산화요원이 제출한 조사표에 의거 대상농가에 공급권발급여부를 소정의 사료(인공유) 공급권발급대장에 기록 유지
 - 추진위는 사료(인공유)공급대상 지역축협에 사료(인공유) 공급권 발급결과를 즉시 통보
 - 통보사항은 발급번호, 발급대상농가, 축종별, 암수별, 바-코드 이표번호 등
- 대상농가는 지역축협에 사료(인공유) 공급권을 제시하고 인공유사료 공급을 신청하면 지역축협에서는 즉시 지급하되 늦어도 5일 이내에 공급
 - 지급기한 : 사료(인공유) 공급권 발급일로부터 1개월(장기간 미수령자 방지)
- 지역축협은 대상농가의 신청에 의해 사료(인공유)를 공급한 후 동공급권을 회수하여 보조금집행 증빙자료로 활용

(나) 바-코드이표장착비

송아지 전산화

① 송아지 생산통보

-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소에서 '95. 10월 30일 이후 송아지가 생산되었을 경우 14일 이내에 추진위 또는 전산화 요원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생산 통보

② 조사표 작성 및 이표장착

- 추진위로부터 지정받은 전산화요원은 전산화한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에 대하여 개체별 조사표(양식2)를 작성한 후 바-코드이표를 장착
- 생산된 송아지에 바-코드이표를 장착하는 개월령은 출생후 2개월 이내에 장착하되 도서지역, 젖소 초유떼기등 조기이유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이보다 빨리 바-코드이표를 장착하고 거래(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가급적 송아지 생산자가 직접 전산화를 하게 함.

③ 바-코드이표 및 조사표 배부

- 일반농장은 추진위에서 전산화요원을 통하여 바-코드이표와 조사표(양식2) 배부
- 공공기관·100두이상 사육하는 전기업목장은 자체적으로 추진위에서 바-코드이표와 조사표(양식2)를 수령하여 조사표를 작성한 후 바-코드이표 장착

④ 작성된 조사표 통보

- 전산화요원, 리장, 공공기관 및 전기업목장의 담당자는 작성된 조사표 및 바-코드이표 장착물량을 매월말 집계하여 익월 5일 이내에 추진위에 통보

⑤ 생산된 송아지 전산입력

- 추진위원회는 관내지역 전산화요원으로부터 통

① 대상

- 소 전산화를 완료한 후 바-코드이표장착을 완료한 전산화요원(인공수정사등)

② 기준

- 전산화요원에게 바-코드 이표장착비 두당 3,000원 지급

③ 방법

- 추진위는 전산화요원이 전산화가 완료된 소에 대해서 바-코드이표를 장착하고 작성된 개체별 조사표(양식2)를 제출하면 전산화요원별로 바-코드이표장착비 지급요청명세표(양식9)를 작성하여 매월 해당 지역축협에 통보
 - 단, 전산화요원이 당해 시·군지역을 벗어나 바-코드이표장착을 하였을 경우 이동후 해당지역 추진위에 통보
- 지역축협은 추진위에서 통보·확인받은 전산화요원의 전산화실적에 따른 바-코드이표장착비를 지급(전산화요원별 계좌 무통장 입금처리)
- 추진위는 전산화요원 명단을 사전에 해당 지역축협에 통보하고 전산화요원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통보

다) 사업비 집행

① 방법

- 교부신청
 - 소 전산화추진위원장(부시장 또는 부군수)은 보조대상자를 대신하여 관내 소 전산화사업계획서(양식10)를 첨부하여 관내 사업분의 농가조사사례비와 바-코드이표장착비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11)에 의거 해당지역 축협에 통보하면 지역축협은 축협도지회에 통보
 - 축협도지회장은 관할 조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취합하여 축협중앙회장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장은 전산입력제비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축협중앙회장에게 제출
- 교부결정
 - 축협중앙회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조사사례비 및 바-코드이표장착비는 지역축협을 통하여 시장·군수가 교부결정
 - 한국종축개량협회 사업분에 대하여는 축협중앙회가 교부결정
- 교부

- 축협중앙회장은 도별, 분기별, 자금계획에 따라 매분기초에 분기별 보조금을 집행기관(지역축협, 한국종축개량협회)에 교부

○ 집행

- 보조금은 예산서 범위내에서 집행(임의전용 및 타용도 사용 불가)
- 농가조사사례비, 바-코드이표장착용역비의 세부집행방법은 사업비지급요령에 의함

② 정산 및 교부확정

- 보조금은 집행실적(양식12)에 따라 정산하고 사용잔액은 축협중앙회(축발기금)에 반납
- 축협중앙회장은 보조금 정산결과에 의거 보조금 교부 확정 통보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소 전산화자료 활용 제한
 -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기획, 계획교배 등 개량사업 및 방역자료와 부수적으로 도난 및 밀도살 근절등의 자료로써 축산진흥 목적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
- 개인의 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소 전산화자료의 무단유출 금지
- 시장, 군수와 축협중앙회장은 사업비지급요령에 의거 보조금이 집행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조금의 임의전용 및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

나. 보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지역축협 및 한국종축개량협회는 '96. 1. 10일 까지 축협중앙회에 보고
 - 축협중앙회는 '96. 1. 31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TEL. 504-9436~7)
- 시도 : 각 시도 축산과
- 시군 : 각 시군 축산과(계), 광역시 농산과
- 기타 : 축협중앙회 축산구조개선 1부(TEL. 224-8413), 한국종축개량협회(TEL. 588-9301)

(주 : 농림수산부 축통 51551-240(95. 8. 28) 및 소 전산화사업 세부시행요령 교재에서 발췌)

축산법 개정 발췌

종 전 안	개 정 안
<p>제15조(가축의 인공수정)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가 아니면 정액을 채취·처리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와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5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1.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 처리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살아 있는 암가축으로부터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대하여 성호르몬의 주사, 정액의 투입, 마취제의 주사 및 관유액의 회수를 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① 학술 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p> <p>② 자가사육 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하는 경우</p> <p>③ 수의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위 중 정액의 주입 및 관유액의 회수 행위에 대하여는 수정사 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p>
<p>제16조(수정사의 면허) 1. 수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축산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가축 또는 인공수정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p> <p>② 수의사</p> <p>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p> <p>④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p> <p>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p> <p>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p> <p>② 정신병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p> <p>③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수정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p>	<p>제16조(수정사의 면허) 1항의 ① 동일</p> <p>② 삭제(수의사는 삭제)</p> <p>③ 동일</p> <p>④ 동일</p> <p>2항 동일</p>
<p>제18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시·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p>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p> <p>② 제 조 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p> <p>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계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p> <p>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p>	<p>제18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p> <p>1. 동일</p> <p>2. 동일</p> <p>3. 삭제</p> <p>4. 동일</p> <p>5. 삭제</p> <p>6. 삭제</p> <p>7. 삭제</p>

종 전 안	개 정 안
<p>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한 때</p> <p>5.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p> <p>6.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한 때</p> <p>7.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p>	
<p>제22조(수정소의 등록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정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수정소를 개설한 수정사의 면허가 취소된 때</p> <p>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3.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p> <p>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p>	<p>제22조(수정소의 등록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정소 또는 수정소를 개설한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수정소를 개설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가 취소된 때</p> <p>2. 수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을 계속하여 2회이상 받지 아니한 때</p> <p>3. 수의사법에 의하여 수의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p> <p>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5.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p> <p>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발급한 때</p> <p>7.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때</p> <p>8.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p>
<p>제23조(정액증명서 등) ①정액등 처리업자는 그가 처리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에 대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p> <p>②수정소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수정란 이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23조(점액증명서 등) ①항은 동일</p> <p>②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25조(수정사등에 대한 감독) ①농림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정사에 대하여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25조(수정사등에 대한 감독) ①농림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정소를 개설한 수정사, 수의사, 정액등 처리업자 또는 수정소에 대하여는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협 회 소 식

'95축산인 신년교례회 참석

- * 일 시 : '95. 1. 6
- * 장 소 : 축협중앙회
- * 주 최 : 축산신문사

'94하반기 감사실시

- * 일 시 : '95. 1. 13
- * 장 소 : 협회 사무실
- * 내 용 : '94하반기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

각 지회별 정기총회 실시

도 별	일 시	장 소
전 남	95. 1. 20	광 주
충 북	1. 23	청 주
충 남	2. 7	공 주
강 원	2. 9	횡 성
경기북부	2. 14	의정부
전 북	2. 16	전 주
경남	2. 17	창 원
경북	2. 17	점 촌
경기남부	5. 28	이 천

'95. 1/4분기 이사회 개최

- * 일 시 : '95. 1. 24
- * 장 소 : 축산회관 회의실
- * 내 용 :
 - 활동보고
 - 업무보고
 - 감사보고
 - '94 결산서
 - '95 사업계획 및 예산서
 - 정기총회 일정 및 준비
 - 임원선거 절차 및 추진

협회 정기 총회



- * 일 시 : '95. 2. 21
- * 장 소 : 축산회관 대회의실
- * 참석인원 : 재적대의원 183명 중 109명 참석
- * 내 용 :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감사패

이 인 형	축산기술연구소 기술부장
-------	--------------



공로패

도지회	상 호	성 명
경 기 북 부	덕정가축인공수정소	조 성 경
경 기 남 부	다산가축인공수정소	정 낙 영
강 원 도	신양가축인공수정소	정 갑 복
충 청 북 도	중원가축인공수정소	이 수 희
충 청 남 도	한샘가축인공수정소	배 상 열
경 상 북 도	종합가축인공수정소	장 정 열
경 상 남 도	동해가축인공수정소	최 규 수
전 라 북 도	신평가축인공수정소	김 왕 식
전 라 남 도	하나로가축인공수정소	서 병 근

- 활동보고
- '94 결산안 승인
- '9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임원선출

직 위	성 명	내 용
회 장	이 재 우	유임
부 회 장	안 장 호	"
감 사	장 길 용	신임
감 사	서 양 환	"

각도별 이사승인

도 별	성 명	도 별	성 명	도 별	성 명
경기북부	홍규태	충청북도	박규연	경상남도	이시화
경기남부	권순철	충청남도	김본종	전라북도	권혁윤
강원도	권언중	경상북도	이재복	전라남도	김의성

가축개량총괄제도의 조기정착 및 발전방향 심포지엄

- * 일 시 : '95. 3. 3
- * 장 소 : 수원 농촌진흥청 대강당
- * 참 석 자 : 축산관련 공무원 및 단체
- * 내 용 : 회장 토론자료 발표

2/4분기 이사회

- * 일 시 : '95. 4. 6
- * 장 소 : 축산회관 소회의실
- * 내 용 : • 활동보고

- 업무보고
- '95 보수교육 계획 설명
- 등록위원 교육계획 설명
- 등록위원 교육계획 설명

등록위원 교육 실시

- * 일 시 : '95. 5. 9~5. 19
- * 장 소 : 충북 단양축협 관광목장
- * 주 최 : 한국종축개량협회
- * 참석인원 : 회원 130명

기별	1기	2기	3기	4기
일정	5.9~ 5.10	5.11~ 5.12	5.16~ 5.17	5.18~ 5.19
인원	31	40	43	16

보수교육 실시(상반기)

- * 일 시 : '95. 5. 11~6. 16
- * 장 소 : 서울 용산구 이촌동 농업기술 진흥관
- * 수료인원 : 334명
- * 내 용 :

기별	1기	2기	3기	4기	5기	계
일정	5.11 ~12	5.18 ~19	5.25 ~26	6.8 ~9	6.15 ~16	
인원	78	90	66	49	51	334



지회별 단합 체육대회 개최



지회별	일 정	장 소	비고
충 남	95. 5. 14	홍성 광천상고	
충 북	5. 17	옥천 공설운동장	
경 기 남 부	5. 28	이천 강상체육공원	
전 북	6. 6	임실 사선대	

주요 활동 내용

- * 일 시 : '95. 4. 7
- * 내 용 :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농림수산부)
정액처리업체 개선협의(사무국장 참석)
- * 일 시 : '95. 4. 11
- * 내 용 : 국내산 보증종모우 검정평가 및 시사회
참석(유우개량사업소)
- * 일 시 : '95. 4. 20
- * 내 용 : 한우경쟁력 제고방안 회의 참석
(농림수산부 유통과)

- * 일 시 : '95. 5. 3
- * 내 용 : 성환중축개량부 방문
• 한우개량단지 평가자료 제공
• 수정란 이식 교육 진행 협의

- * 일 시 : '95. 6. 3
- * 장 소 : 고려대학교
- * 내 용 : 수정란이식학회 행사 참석

- * 일 시 : '95. 6. 23
- * 장 소 : 충남대학교
- * 내 용 : 축산분야 종합 학술 심포지엄 참석

각 도지회 지부에서 당협회로 시정건의한 사항

- (1) 95. 1. 17
한우개량단지 사업관련 건의에 대한 농림수산부 장관 회신
- (2) 95. 4. 13
한우개량단지 지도 감독 관리 철저히시도 농림수산 부장관이 축협중앙회에 시정지시
- (3) 95. 5. 4
경남 밀양시 지부장 황선열이 건의한 개량단지운영 의 문제점 시정건의

동 정

- (1) 95. 2. 1 수정사협회 경기문 사무국장 사망
- (2) 95. 5. 4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650 김수경 가축인공수정소 김수경 사망
- (3) 95. 6. 1 경북 문경시 호계면 부곡리 340 현대가축인공수정소 김종태 사망

가축인공수정 수태율 증대를 위한

정액 용해기

■ 본 제품의 용도

1. 한우(牛), 젓소, 돼지(豚)의 수태시 인공수정 작업에 정확한 온도 조절으로 수태율(%)을 높일 수 있는 냉동된 정액 용해기(SEMEN THAW UNIT)입니다.
2. 풀인 물에 탄 아기 이유식, 우유, 또는 한약 기타 음료를 항상 먹기 좋은 적당한 온도(30°C~40°C)로 장시간 유지하는 보온 CAR POT입니다.

■ 본 제품의 특징

1. 이동중인 자동차의 좁은 공간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온도를 30°C~40°C 이내에서는 임의로 조절할 수 있고 온도 편차가 +, -0.5°C 범위까지 가능합니다.
3. 첨단 전기, 전자회로에 의해 설계, 조립되었으며 간결한 디자인과 무게가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리합니다.

■ 사용법 및 주의사항

1. 예열작업은 차내 또는 실내·외의 습기가 없고 충격을 받지 않는 벽면에 준비된 걸고리를 부착하고 본체를 안전하게 걸어 놓으세요.
2. 본 제품의 사용전원은 자동차 DC 12V 전원이나 AC 전원을 DC 12V, 3A이상으로 변환시켜주는 아답타(AC ACAPTOR)를 연결, 사용하는 제품입니다.(24V와 일반전원 사용제품은 별도 주문 요망)
3. 매회 1차 가열시는 엔진가동중일 때 하십시오.
4. 물(내용물)을 적당량(넘치지 않게) 채우세요. 이 때 용기 전체가 물에 잠기면 안됩니다.
5. 다음은 라이타 클러그(Jack)를 결합하세요. (전기 접촉이 불확실하면 열이 발생하고 회로의 단선 현상이 발생합니다.)
6. Jack을 결합한 후 적색 램프가 켜져 있는

가 확인하세요.

7. 전원이 입력된 후 약 7~10분 정도면 물의 온도가 기 조정된 36°C~38°C로 상승하며 이때 적색, 녹색 램프가 동시에 켜지고 램프이 밝기와 색 정도가 동일하며 멜로디로 신호음이 울립니다. 이 때 내장된 온도계를 확인하고 다음 작업을 준비하세요.
8. 특히 녹색 램프의 밝기와 색 정도가 진할 때는 물의 온도가 높은 상태이니 확인 후 처리하세요.
9. 위의 7번항, 8번항의 사항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물의 온도가 적정치 않으면(낮거나, 높으면) 제품 하단 측면에 부착된 온도조절 스티카의 적색 점선 원 내부에 설치된 온도조절용 보름레바를 평 드라이버로 충격 없이 가볍게 좌·우로 약간씩 조절하여 적절한 온도로 조정하십시오.
10. 온도 조절구(부착된 스티커의 표기 참조) 내부의 백색 보름 레바를 좌로 돌리면 낮은 온도로, 또는 우로 돌리면 높은 온도로 조정되니 조금씩 돌려 낮은 온도 즉, 34°C~35°C정도에서 필요한 온도로 올려 맞게 조정하십시오. 이 때 보름 레바를 무리하게 조정하면 기능이 상실되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11. 본 제품은 조립 검사시 실제 실험으로 36°C~38°C로 조정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 전에 위의 전 항목에 따라 직접 1차 실험으로 확인하고, 1차 가열된 물을 교환하여 정상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12. 본 제품에 필요한 DC 12V 전원의 “+”선, “-”선 결선시에 부주의로 인하여 바꾸어 결선하거나 합선이 되면 내부 전자부품에 과열 현상 또는 단선이 되오니 임의 개조는 절대 금합니다.
13. 정상 A/S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개조하거나 이상이 발생할 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당사 A/S센터로 즉시 문의 바랍니다.)



社団法人 韓國家畜人工授精師協會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1516-5 축산회관內
TEL : (02) 586-9408 FAX : (02) 586-9408

137-073

